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4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김문수·정을호·박성준

김 윤 • 이해식 • 박지원

한준호 • 백승아 • 이수진

김우영 · 이훈기 · 양부남

주철현 · 조계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교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한 0.8%의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율 보정 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도입 20년 가까이 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사문화되었음.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초·중·고등학교 운영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부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 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5조의3 삭제 등).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 가 등을 고려하여"를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 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 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 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 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 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 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 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 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원인건비의 전 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 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u>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 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 원의 380분의 90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 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 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 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요한 때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 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 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 | <삭 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